

분쟁조정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1년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	
	상 호	전화번호	
	주 소		
피신청인	성 명	전 화 번 호	
	상 호	등록번호	
	주 소		

조정을 받으려는 사항

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

「종자산업법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(서명 또는 인)

산 립 청 장
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

첨부서류	1.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(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) 2.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·조정예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	수수료 1. 분쟁조정 신청: 품종당 1천5백원 2. 시험·분석 ◦ 재배시험: 품종당 50만원 ◦ 유전자분석: 품종당 30만원 ◦ 종자 및 묘 품질분석: 품종당 5만원
------	--	---

작성방법

1. "조정을 받으려는 사항"란에는 신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,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.
2. "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의 개요"란에는 분쟁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,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.
3.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을 따르되, "신청인"을 "신청인 또는 피신청인"으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